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직종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및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소지 필요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학생연구자 포함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월별보험료 부과 방식 규정

(안 제19조의3제3항, 제56조의6제2항)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의 월별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부과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부과하는 등 월별보험료 부과방식을 규정

*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나.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자료제공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22년 7월부터 추가되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중 산재보험 적용으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규정이 있는 직종 이외 신규 2개 직종*에 대하여 근거 규정 마련

*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보수충액신고 완화(안 제19조의7제3항)

노무제공자는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을 신고받거나 실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월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수충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실익이 없어 신고 완화

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8제1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자영업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

마. 플랫폼사업자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56조의13)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 등에 보험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학생 연구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근거 규정 마련

바. 학생연구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5조)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학생 연구자를 포함함으로써 대학·연구 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

*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건설업 외) 또는 총 공사금액 60억원이상 사업(건설업)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가.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

제15조제2항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학생연구자 명단
제19조의3제3항제5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영 제19조의7제3항”을 “영 제19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7항제4호”를 “제8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항제5호”를 “제8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항제6호”를 “제8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월평균보수를 모두 통보한 경우 또는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특성상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별도 고시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된”을 “제출한”으로, “따
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 단서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
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54조의2에 제19호의13 및 제19호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제56조의6제2항 중 “제104조의11제10호 또는 제11호”를 “제104조의11제
1항제10호,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제17호”로 한다.

제56조의8제1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증서를 보유하고 실
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
행기관은”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 ----- -----. ----- 다음 각 목 ----- ----- ----- ----- ----- ----- ----- ----- ----- ----- -----.
<신설>	가.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신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
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
항까지 및 제7항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충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
를 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략)

따른 신고 및 신청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른 학생연
구자 명단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노무제공자

6. (생략)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제11호 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6. (현행과 같음)

④ -----

-----.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 영 제19조의7제4항-----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월평균보수를 모두 통보한 경우 또는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특성상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별도 고시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illegible]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생략)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② -----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제17호-----.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의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제56조의8(가입대상 자영업자) -----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u>것</u> <단서 신설>	1. ----- <u>것.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증서를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6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7의4. (생략)	1. ~ 17의4. (현행과 같음)
<신설>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u>학</u> <u>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u> <u>에 관한 사무</u>
18. ~ 23. (생략)	18. ~ 2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9